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성동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위원 황철규입니다.

○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구성과 운영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와 구성 기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반영하여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 구성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피해학생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개정안은 우선 제24조를 신설하여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확히 하고, 위원 구성은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자격 기준을 따르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하여 법령 충돌을 방지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기존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조항 번호를 조정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조례의 실효성과 적용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2026년 12월까지의 유효기간을 두어 제도 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피해학생 관점이 충분히 반영된 심의가

가능해져학교폭력 대응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폭위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두는 것은 학폭 대응의 책임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조치이며, 학교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정책 실행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학생의 안전과 교육현장의 신뢰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인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